関係官과 運營方案 토의 開催

永登浦 分所서

✦·· 지난 5月11日 오후 7시 本協会 서울市支部 永登浦分所 회의실에서 会員 一同은 徐 廷 達 理事와 區庁 李周浩 建築課長, 신연각係長 및 担当職員 參席下에 운영방안에 대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토의안건에 대하여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추인허가건

1970년 6월 20일 이전 무허가 건물에 해당.

정착지는 공지비를 무시함.

기타는 공지비를 적용함.

단) 무허가 등재증명(동사무소)에 누락된 건물은 동장의 확인에 의하여 처리한다.

(2) 침수지역

침수지역은 건축허가를 통제함(한강 수위 10m 기준)

(위치~한국타이야 뒤, 구로동 120번지, 신도림동 일대)

※구청에서 지역제시함

(3) 신림동, 봉천동 지구의 허가 사항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건축허가는 가환지증명, 지시측량(환지과)이 첨부되면 허가함.

(4) 지하실 설치

층에 무관하고 연면적 200m²이상에 한하여 연건평의 $\frac{1}{10}$ 이상.

단) 공장, 학교는 1인당 0.25m², 일반건축물은 200m²이상일 때 $\frac{1}{10}$ 이상.

(5) 정화조 설치

대지 경계선에서 2m이상 떨어져 설치해 주시기 바람.

단) 동의서 첨부시는 제외됨.

(6) 국기봉 설치

상업지역내에서 15m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국기봉을 설치하고 입면에 표시해 주기 바람.

단) 국기봉 상단의 위치는 지상 10m 선상에 있어야 함.

예) 지상 8m의 건축물의 국기봉 높이는 2m가 되어야 함.

(7) 미관지구

영등포구는 1종 미관지구는 없고 2종 이하 이므로 건물길이와 폭은 12×6m이상과 3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하여 허가됨.

단) 고도지구에 접하면 고도지구의 제한을 받음.

(8) 서류명기사항

신청서, 허가통지서에 착공, 준공 예정일을 명기해 주시기 바람.

(9) 소유권 첨부건

등기부 등본을 첨부할 것

단) 권리증 사본 첨부는 불가함.

(10) 풍치지구 허가건

무허가 건물이 있을 경우 허가 처리되지 않음.

행위허가를 필하고 건축허가를 득할 것.

(11) 위법건축물

ㄱ) 1962년 1월10일 이전 건축물은 허가를 득할 수 있음.

ㄴ) 1962년 1월10일 이후의 건축물은 현행법을 적용함.

(※상기 위법 건축물이란 공지비 초과를 말함)

단) 추후 결정함.

(12) 고압선 인근 건축물의 이격거리

ㄱ) 저고압……3,000V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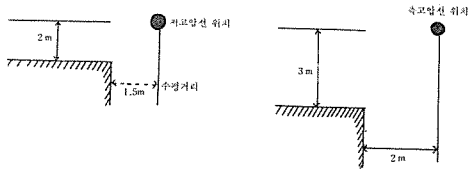
ㄴ) 측고압……3,000V이상